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, 심의 의결 시 사업시행자의 이행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공공주택 특별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훈령안

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”를 “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”로 한다.

제8조제6항제2호 후단 중 “시행자”를 “의결 시 부대하는 전제조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 또는 과도하게 엄격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고, 사업시행자의 이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, 시행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<u>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8조(회의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“조건부의결”로 한다. 이 경우 시행자는 조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⑦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공공주택 특별법</u>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8조(회의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의결시 부대하는 전제조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 또는 과도하게 엄격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고, 사업시행자의 이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, 시행자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